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 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도모.
-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장기 투자사업 및 지방채 상환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원가 수준의 요금 현실화 필요.
-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구미시에서 위탁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 개선사업으로 청소물량이 70%이상 감소함에 따라 분뇨 정화조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해 원가 수준의 요금 현실화 필요.

3. 주요내용

-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차별 평균 7.3% 인상(안 별표 1)
-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을 2014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정화조 수수료 18.8%, 분뇨 수수료 9.2% 인상(안 별표 6)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2013. 3.14)
- 입법예고 : 2013. 4. 5. ~ 4. 25.(20일간)(의견없음)
-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2013. 5.22)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 하수도 특별회계 누적결함액 발생과, 지방채 상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처리구역 관거 정비 등, 장기 투자사업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미시에서 위탁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 또한,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인상을 위하여,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음.

□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경북도 市部 중, 도내 평균치 요금이므로, 2013. 8월 고지분부터 평균 7.3%, 2014. 8월 고지분부터 평균 7.3% 인상 하고자 함.
-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는, 2013. 8월분 및 2014. 8월분 부터 2년에 걸쳐, 정화조 청소 수수료 18.8%, 분뇨 수수료 9.2% 인상하고자 함.

□ 검토결과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에 의거,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을 합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하였으며,
-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청소 수수료 및 사용료 산정을 2011. 12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 대비 26.8%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음.
- 하수도 원가(영업비용) 구성 비용(2011년 기준)비율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54.93%, 민간위탁금(시설공단) 34.27%로, 원가비용 중 8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하수도 사용료도, 2007년 이후 장기간 인상하지 않아, 누적결함액 437억원 발생과 2013년부터 지방채 상환액 55억원, 하수관거 정비 및 처리장 증설 사업비 등이 계속 요구되는 실정임.
- 금회,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 인상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개 년도에 걸쳐 인상 조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비고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 (1단계)	170	190	
	21 ~ 30㎥ (2단계)	220	240	
	31㎥ 이상 (3단계)	490	530	
일반용	0 ~ 100㎥ (1단계)	310	340	
	101 ~ 300㎥ (2단계)	380	410	
	301 ~ 1,000㎥ (3단계)	470	510	
	1,001 ~ 2,000㎥ (4단계)	590	630	
	2,001㎥ 이상 (5단계)	700	750	
욕탕용	0 ~ 1,000㎥ (1단계)	470	520	
	1,001 ~ 1,500㎥ (2단계)	550	610	
	1,501 ~ 2,000㎥ (3단계)	640	710	
	2,001㎥ 이상 (4단계)	730	810	
산업용	㎥당	290	310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용량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8월분부터			비고
	계	수수료	사용료	계	수수료	사용료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18ℓ	226	208	18	236	218	18	

2.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용량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8월분부터			비고
	계	수수료	사용료	계	수수료	사용료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기본 0.75m³	11,445	10,695	750	12,461	11,711	750	
초과 0.1m³당	1,236	1,136	100	1,344	1,244	100	

별표 신규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u>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u> (제16조제2항)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u>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u>(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m³]		
구분 업종별	단 계 별	요금(원)	구분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2013. 8월 고지분부터 2014.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 ~ 20m³ (1단계)	150	가정용	0 ~ 20m³ (1단계)	170 190
	21 ~ 30m³ (2단계)	200		21 ~ 30m³ (2단계)	220 240
	31m³ 이상 (3단계)	450		31m³ 이상 (3단계)	490 530
일반용	0 ~ 100m³ (1단계)	280	일반용	0 ~ 100m³ (1단계)	310 340
	101 ~ 300m³ (2단계)	350		101 ~ 300m³ (2단계)	380 410
	301 ~ 1,000m³ (3단계)	430		301 ~ 1,000m³ (3단계)	470 510
	1,001 ~ 2,000m³ (4단계)	550		1,001 ~ 2,000m³ (4단계)	590 630
	2,001m³ 이상 (5단계)	650		2,001m³ 이상 (5단계)	700 750
욕탕용	0 ~ 1,000m³ (1단계)	420	욕탕용	0 ~ 1,000m³ (1단계)	470 520
	1,001 ~ 1,500m³ (2단계)	490		1,001 ~ 1,500m³ (2단계)	550 610
	1,501 ~ 2,000m³ (3단계)	570		1,501 ~ 2,000m³ (3단계)	640 710
	2,001m³ 이상 (4단계)	650		2,001m³ 이상 (4단계)	730 810
산업용	m³당	270	산업용	m³당	290 310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현행과 같음		

[별표 6]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제27조제1항)

(단위 : 원)

구분	용량 (ℓ)	계	수수료	사용료
구미시	18ℓ	216	198	18

비고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용량(㎡)	계	수수료	사용료
기 본	0.75	10,490	9,740	750
초 과	매0.1㎡당	1,135	1,035	100

비고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제27조제1항 관련)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용량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8월분부터		
	계	수수료	사용료	계	수수료	사용료
18ℓ	226	208	18	236	218	18

비고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2.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용량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8월분부터		
	계	수수료	사용료	계	수수료	사용료
기본 0.75㎡	11,445	10,695	750	12,461	11,711	750
초과 0.1㎡당	1,236	1,136	100	1,344	1,244	100

비고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